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23
----------	------

발의연월일 : 2020. 10. 14.

발 의 자 : 임이자 · 서일준 · 정진석  
권명호 · 송언석 · 김정재  
金炳旭 · 이종성 · 추경호  
박대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제와 촉매제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사전에 제조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촉매제나 첨가제의 품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의 성능이나 배출가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검사에 유효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사업자가 공인된 검사를 통해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업체명,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여 첨가제와 촉매제의 품질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첨가제,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확인 검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다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74조제3항, 제4항).

나.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4조제11항, 제94조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8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⑪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4조제3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의2.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 제3항, 제4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4조 제2항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① (생략)</p> <p>②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③ ~ ⑦ (생략)</p> <p>⑧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u>&lt;신 설&gt;</u></p>	<p>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p> <p>⑤ ~ ⑨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p> <p>⑩ ----- 제5항----- ----- -----.</p> <p>⑪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p>

<p>제94조(과태료) ①·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14. (생략)</p> <p><u>&lt;신설&gt;</u></p> <p>15.·16. (생략)</p> <p>④ ~ ⑥ (생략)</p>	<p><u>한다.</u></p> <p>제9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14. (현행과 같음)</p> <p><u>14의2.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p> <p>15.·16.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	--